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22

발의연월일: 2024. 10. 22.

찬 성 자: 박균택 · 전진숙 · 서영교

전현희 · 장경태 · 김현정

김태선 • 박지원 • 김주영

맹성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게 하고,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행위가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게하고 있음.

또한, 위와 같이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상 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도입된 제도로, 2020년 도입된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위와 같 은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상 황임.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에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 건이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업 무 수행의 공백을 없애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업무가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법률 제 호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총장에게"를 각각 "검찰총장 또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제기할"을 "제기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고발 등) 특별감찰관은 감	제19조(고발 등)		
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	1		
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검찰총장 또는 고위공직자범		
	<u> 죄수사처장에게</u>		
2.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2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			
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			
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한 때: <u>검찰총</u>	<u>검찰총장</u>		
<u>장에게</u> 수사의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u>에게</u>		
제20조(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20조(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			
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			
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			
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u>제</u>	<u>제기하</u>		
<u>기할</u> 수 있다.	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